

문서번호	업무지원팀-163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08.31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강서지사장	
	전결 08/31	
김대영	노계호	
협 조		
감 사		

**6차산업협회와 유통인 및 새마을부녀회  
간 협약 체결 결과 보고**

**2016. 8.**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업무지원팀**

# MOU 체결 결과

## □ MOU 체결 개요

- 일시 : 2016.8.26.11시
- 장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회장 : 김성수, 사무총장)(사)새마을운동강서구새마을회(회장 이옥남), (주)다농마트(대표 박용순), (주)수인식자재(대표 김도균), (사)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대표 이윤근), 문경 미소(대표 김경란), 강서지사장 외 2.

## □ MOU 체결 주체

-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회장 : 김성수)
- (사)새마을운동강서구새마을회(회장 이옥남), (주)다농마트(대표 박용순)  
(주)수인식자, (사)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대표 이윤근)

## □ MOU 체결 내용

- 경북 문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청, 오미자 와인 등을 판매, 홍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협력 체계 구축
- 오미자 수확시기인 9월 중순 이후 오미자 수확 체험행사를 하기로 합의

## □ MOU 체결 사진



붙임 : 협약서 3부. 끝.

# 상생 협력 양해각서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와 각 직능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농수축산식품 유통, 판매, 홍보 확대를 통한 농촌·농업 발전과 6차 산업 성장의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정 당사자 간의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상호 협력함에 있어 협정 당사자 간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농수축산식품 유통, 판매 확대를 위한 제반 사항
2. 농수축산물 가공제품 유통, 판매 확대를 위한 제반 사항
3. 6차산업 관계자와 이해당사자 발전에 협력
4. 소비자 만족을 위한 협력과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5. 각 단체 간의 업무 협력 및 상호 발전 분야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호 협의된 관심 분야

**제4조(비밀유지)** 본 협정에 의거한 협력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은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의조정)** 본 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정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협정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 시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6조(협정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26일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김성수

金成洙

서울남서부수피마켓협동조합

대표 이윤근

이윤근

제6조(협정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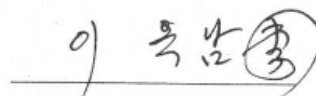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김 성 수



(사)서울강서구새마을회

회장 이 옥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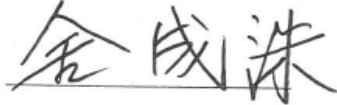
제6조(협정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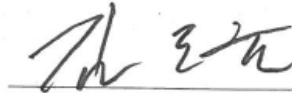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김 성 수



㈜수인식자재

대표 김 도 균



제6조(협정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26일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김 성 수

金成洙

㈜다농마트

대표 박 용 순

박용순